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65
----------	-----

제출년월일 : 1999. 9. 6.

제 출 자 : 고성군수

1. 개정이유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정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자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위함

2. 주요골자

- 관리인의 지정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8조)
- 관리대장의 비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11조)
- 화장실의 개방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12조)
- 유료화장실의 승인및 준수사항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16조및 안 제17조)

3. 참고사항

- 행정규제 완화 및 자치법규 정비

4. 본 문 : 덧붙임과 같음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중 “제8조 내지 제12조”를 “제9조 내지 제10조”로 한다.

제14조중 “제8조 내지 제10조”를 “제9조 내지 제10조”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아니한 자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을 지키지”를 삭제한다.

[별표] 제2호 5.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의 다음 사항을 삭제한다.

5.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제17호 (제2호 내지 제4호)	20	30	50
---------------------	----------------------	----	----	----

[별지 제]호서식 앞면·뒷면,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앞면·뒷면]을 각각 삭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관리인의 지정) <u>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u> <u>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실의 청결 유지와 효율</u> <u>적인 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u>	제8조(관리인의 지정) <삭제>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u>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u> <u>는 자는 화장실에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u> <u>비치하여 시설의 정비상황과 유지·관리상황을 기록</u> <u>관리하여야 한다.</u>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삭제>		
	제12조(화장실의 개방) ① <u>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u> <u>는 자는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u> <u>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내부에 설치된</u> <u>공중화장실은 영업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u> ② <u>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이외에</u> <u>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u> <u>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u> <u>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u> <u>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u> ③ <u>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u> <u>에는 개방화장실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u> ④ <u>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u> <u>설치·관리하는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u> <u>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u> <u>하는 범위안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u>	제12조(화장실의 개방) <삭제>		
	제13조(시설점검) <u>군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 제5조,</u> <u>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u> <u>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2회(상·하반기) 정기</u> <u>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u>	제13조(시설점검) ----- 제9조 내지 제10조----- ----- -----		

현행	개정안
<p>제14조(개선명령) 군수는 시설을 점검한 결과 공중 화장실이 불결하거나, 제5조,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선명령서에 의하여 시설의 개선·청결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p>	<p>제14조(개선명령)----- -----, 제9조 내지 제10조-- ----- ----- ----- -----</p>
<p>제16조(유료화장실의 승인) ①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료화장실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이 시설안의 화장실을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2. 전담관리인을 들 것 3. 화장지, 비누, 수건(또는 에어타월기)등 편의용품을 비치 제공할 것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설의 적정성 여부등을 검토하여 적정할 경우 이를 승인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한다.</p> <p>③유료화장실의 사용료는 군수가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승인하여야 한다.</p>	<p>제16조(유료화장실의 승인) <삭제></p>
<p>제17조(준수사항)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 화장실의 승인을 받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것 2.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금액을 초과 징수하지 않을 것 	<p>제17조(준수사항) <삭제></p>

현행	개정안
<p>3. 화장실 입구에는 유료화장실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사용료 표지를 부착할 것</p> <p>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균수기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p> <p>제18조(과태료 부과징수등) ①균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p> <p>② ~ ④ (생략)</p> <p>[별표] 2 개별기준</p>	<p>제18조(과태료 부과징수등)1<삭제></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별표] 2 개별기준</p>
<p>5.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p> <p>제17조 (제2호 내지 제4호) 20 30 50</p> <p>[별지 제1호서식 앞면·뒷면,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앞면·뒷면]</p>	<p>5. 삭제</p> <p><삭제></p>